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·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·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,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(안 제7조의2 신설 등).
- 기존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18조의2 등).
-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「감사원법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(안 제37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: “공론화”의 의미 명확화 필요

안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“공론화”를 거친

경우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.

이는, 위원회가 규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, 국민의 의사를 규제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임.

다만, “공론화”는 “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(여론)을 열린 토론을 통해(숙의과정) 진정한 공동체의 뜻에 가까운 견해(공론)를 형성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의식적 행위”인바,¹⁾ 어느 정도의 숙의과정을 거쳐야 공론화를 거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,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와 관련한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,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및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은 “공론화”를 “이해관계인·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”으로,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은 “숙의공론화장”을 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”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“공론화” 등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	
방사성폐기물 관리법	제6조의2(공론화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<u>이해관계인·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</u>

1) 황수정·은재호·박재근, “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”, KDI 연구보고서(2020-02), p.8

	차(이하 이 조에서 “ 공론화 ” 라 한다)를 거칠 수 있다.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	제18조(공론화 등)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<u>이해관계인·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 공론화 ” 라 한다)를 거칠 수 있다.
지속가능발전 기본법	제29조(국민 의견의 수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<u>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</u> (이하 “ 속의공론화장 ” 이라 한다)을 마련할 수 있다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,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일반국민·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, 해당 공론화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마련함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2조(심사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<u>공론화</u> 를 거친 경우 <u>그 결과를 우선</u> 고려할 수 있다.	제12조(심사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대하여 일반국민·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공론화”라 한다)를 거친 경우, <u>해당 공론화의 결과를 우선적으로</u> -----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
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